

미주리 침례회의 규약

Ⅰ. 연례회의 준비

1. 개개의 연례회의 시간, 장소(도시), 그리고 위치는 시설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 후 이사회의 추천과 함께 총회에 의하여 4년 전에 정한다.
2.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에 의하여 계획한 연례회의를 갖기가 불가능 한다면, 부적당할 때 Committee on Local Arrangement와 상의 후 이사회와 총회 임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직권이 있다. 단, 변경 공식 통지서를 총회 총장의 사인 후 적어도 변경된 연례회의가 시작하는 첫날 30일전 각 협력 교회에 우송한다. 통지서는 정확하고 두드러진 총회의 용지에 의하여 우송한다.
3. 이사회 직원에 의한 도움과 함께 Committee on Order of Business and officers of the Convention은 총회의 연례회의의 일정을 책임진다.
4. 현지 준비 위원회에 의한 도움과 함께 총회 직원은 총회의 연례회의를 위한 준비를 책임진다.
5. 이사회는 최소한 정기적으로 계획한 연례회의 30일전에 각 추천장을 공식 미주리 침례회 뉴스저널(News Journal)에 발표한다. 단 이것이 총회회보에 발표하는 것을 추진하게 하는데 늦지 않게 이사회의 보고하는 날 비상사태에 의하여 수반된 추천장이다.
6. 이사회와 행정 직원들의 도움으로 등록하는 메신저들에게 적합한 가격의 Book of Report를 제공한다. 이 Report에는 각 총회 위원회, 임무, 기관, 상임 또는 특별위원회, 또는 책임구역의 연례보고를 총회의 개회 전에 인쇄물로 준비한다.
7. 연례회의 때 대[소형 전시의 감독은 이사회의 책임이며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Ⅱ. 메신저 등록

1. 이사회 직원들의 도움과 함께 Committee on Enrollment는 연례회의 전과 사이에 메신저들 등록 일을 준비한다. 각 메신저는 승인된 위임장을 메신저로

등록되기 전에 제출한다. 만약에 메신저의 위임장에 질문이 발생하게 되면 이 일을 총재가 임명한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총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 또는 권고하기 위함이다. 모든 정당하게 등록된 메신저들은 총회를 구성한다. 각 메신저는 총회헌법, 규약, 그리고 의회의 권리대로 모든 권리와 특권들을 준다.

II. 연례회의 운영

1. 각 회의(session)는 예배와 기도로 개최한다.
2. Committee on Order of Business는 첫 회의 때 연례회의의 안건들을 제출한다. 안건은 총회 목적의 촉진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안건은 또한 메신저들에 의하여 제출된 기타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허용한다. Committee on Order of Business는 특별 규칙들을 위하여 시간을 부과한다. 지난 연례회의 이후에 소천하신 목회자들의 명단을 연례교회개요(the Annual Church Profile)를 통하여 준비하고, 총회 일간회보에 실리고, 추도기도, 예배스케줄을 총회기간 사이에 잡는다. 연례교회개요(the Annual Church Profile)로부터 집계한 대로 Committee on Order of Business는 전 협회/전례역년(associational/church year)에 소천하신 미주리 침례 목회자를 삼가 기념하기 위하여 추도예배 시간을 따로 잡는다. 이 예배는 집계된 목회자 이름들의 명단을 낭독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총재의 인사말을 첫 회의 때 그리고 연 설교를 두 번째 회의 때로 스케줄을 잡는다.
4. Committee on Convention Committees와 Tellers Committee에 지명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첫 회의 때 낭독한다. 두 번째 회의 때에는 Committee on Convention Committees가 Committee on Convention Preacher에 일할 사람들을 지명한다. 마지막 날에 Committee on Convention Committees는 다음 연례회의 때 보고할 위원회에 일할 사람들을 지명하는데 Committee on Continuing Review, Committee on Enrollment, Committee on Order of Business 그리고 Committee

on Resolutions다. 메신저들은 Committee on Convention Committees의 지명 후 지명할 권리가 있다. Committee on Convention Committees는 또 2년 동안 일할 현지 준비 위원회(Committee on Local Arrangements)를 지명하는데 향후 2년 후 연례회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참가자로부터 지명이 없을시 동의에 의하여 총회가 지명한 사람에 대하여 총회가 실행한다. 제기가 된 자리가 있을시 투표를 한다.

5.

- a. 기타 사무로 제시된 제안은 서면으로 늦어도 마지막 회의 전날 총회에 제출한다. 기타 사무로 제시된 각 초기 제안은 토론하기 전에 메신저들에게 자료처럼 사본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제시한다.
- b. 추천된 결의안들은 Committee on Resolution에 총회의 연례회의 30일전에 보내는데 목적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의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미리 Committee on Resolution에 보내진 것들을 포함한 모든 추천된 결의안들은 등록된 메신저들에 의하여 총회비서에게 늦어도 총회 첫날 저녁회의를 휴회하기 전에 제출한다. 추천된 결의안 제목들은 총회 이틀째 되는 날 기타 사무의 소개를 위한 첫 시간 동안에 총재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이 총회 기록에 입력한다. 오로지 등록된 메신저들만 결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결의안은 제목, 날짜, 제출하는 메신저의 이름과 주소와 출신교회를 할 수만 있다면 타자한 것이어야 한다. 각 결의안은 검토 및 개정을 위하여 Committee on Resolution에 회부하며 이 위원회는 각 정식 상정된 결의안을 적어도 연례회의 마지막 날 전에 보고한다.
- c. 다음 연례회의 때 조치를 필요로 하는 제출된 헌법 개정안은 기타 사무 회의 때 제출한다.
- d. Committee on Continuing Review는 총회 규약 또는 사무와 재무계획에 제안된 개정안을 늦어도 연례회의 30일전에 공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안은 Book of Report에나 총회 첫 회보에 활자화 한다. 하지만 메신저들에 의하여 제안된 이들 규약이나 사무와 재무 계획의 개정안은 기타 사무처럼 늦어도

연례회의 마지막 이전 날에 상정한다.

6. 총회는 새 위원회의 조직을 돕기 위하여 집행 위원회 회원들을 늦어도 연례회의 마지막 이전 날에 선출한다.
7. 임원선출은 투표로 한다. 단, 임무를 맡을 자리에 단일후보만 있다면 총회는 기록 담당자나 다른 사람에게 총회의 만장일치의 투표를 계산하도록 지명한다. 각 지명된 사람은 한번 지명연설을 할 수 있는데 3분을 초과하는 것을 금한다. 총재는 늦어도 연례회의 첫 하루 전에 선출한다. 단, 결선은 다음날로 미룬다. 제1 부총재, 제2 부총재, 그리고 기록 담당자는 회의 마지막 날 선출한다. 임원들은 연례회의 끝날 부터 다음 연례회의 때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8. 기금을 위한 개인적 호소는 어느 회의에서든 금한다. 총 메신저 투표의 2/3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내려진 특별한 지시 외에는 어떠한 이유든 회의 때 모금하는 것을 금한다.
9. 총회 때 회부되는 사무에 관계되는 것과 그것이 메신저의 이름으로 밝혀지거나 기관 또는 이사회 직원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 된 것임을 밝혀지거나 기관 또는 이사회 직원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 된 것임을 밝혔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회의장에서는 아무것도 배포할 수 없다.
10. 총회의 연례회의 기간 동안 사무행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적어도 20 %의 정당하게 등록하고 참석한 메신저를 한다.

II. 의회의 권리

1. 총회의 의회의 권리는 Roberts Rules of Order(최근판)로 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총회의 헌법, 규약, 그리고 사무와 재무계획의 조항을 대신 할 수 없다.

III. 총회의 연속

1. 연례회의 후 30일 이내에 회의요약을 기록하는 것을 책임 맡고 있는 기록 담당자는 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선출된 각 사람에게 우편으로 알리며

그는 또한 이사회, 기관, 또는 위원회에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었거나 조회하여 영향을 미치는 제안의 사본을 지시에 상관없이 우편으로 보낸다.

사무국장은 기록 담당자의 요구 시 도움을 준다.

II.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1. 총회는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a. 연례회의에서 선출되었음을 연례회의에서 보고: *Committee on Convention*

Preacher, 두 번째 회의에서 선출된 3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례설교 설교자를 다음 연례회의에 그리고 대리인을 추천한다.

b. 연례회의에서 다음 일 년 임기 회원 선출보고.

(1) 등록위원회. 마지막 날 선출된 3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례회의 전과 사이에 메신저들의 등록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집행위원회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2) *Committee on Resolutions*. 마지막 날 선출된 5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초안을 작성하고 메신저들에게 적합함을 결정한대로 결의안들을 제출한다. 그리고 추천에 상관없이 메신저들에 의하여 상정되고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결의안들을 보고한다.

c. 선출 후 연례회의 전과 사이에 2년 복무 : 현지 준비 위원회(*Committee on Local Arrangements*) 마지막 날 선출된 8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향후 2년 후 연례회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현지 준비를 는 직원을 돕는다.

d. 임기 3년인 회원 선출 후 연례회의에서 보고:

(1) *Committee on Continuing Review*. 6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2명은

매해 마지막 날 선출한다. 위원회는 총회운영을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헌법, 규약 또는 사무와 재무계획의 수정을 추천한다.

연례회의에서 제안된 미주리 침례회헌법 개정안은 동의와 재청으로 그

개정안의 심사와 심문을 하고 다음 총회 연례회의 때 총회에 보고와 추천을 위하여 이 위원회로 회부된다. 규약 또는 사무와 재무계획에 제안된 개정안은 재청으로 연례회의 마지막 날 보고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로 회부된다.

- (2) **Committee on Order of Business.** 6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2명은 매해 마지막 날 선출한다. 그리고 총회의 임원들이다. 위원회는 연례회의를 위한 일정을 준비한다. 채택을 위하여 제출한다. 첫 회의 때 연례회의를 위한 의사일정. 그리고 특별한 지시를 위하여 시간을 정한다.
- (3) **심사 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 6인으로 구성된다. 최소한 2명은 매해 연례회의 마지막 날 선출한다.
- A. 심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다. 초기엔 2명 회원들이 1년 동안 일한다. 둘은 2년 임기동안 일하고 2명 회원들은 3년 임기동안 일한다. 그래서 회원들은 3년 임기동안 일한다.
- B. 이 위원회는 교회회원자격이나 메신저들의 신임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추천을 한다.
- C. 위원회는 총회가 때때로 채택하는 규칙 및 순서에 의하여 좌우한다.
- D.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협동에 문제나 질문이 생기게 되면 위원회는 교회에 통보하고 교회의 회답을 구한다. 조사가 종료된 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이에 대한 추천을 공포하고 문제나 질문대상 교회에 적절하게 통보한다.
- 그러한 추천은 메신저들에게 다음 연례회의 사무회의 때 제출한다.
- E. 총회의 연례회의 때 메신저의 등록에 문제나 질문이 발생할 때 위원회는 메신저들에게 통보한다. 이치에 맞는다면 출신교회에도 통보하고 교회의 회답을 구한다. 조사가 종료된 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이에 대한 추천을 공포하고 문제나 질문대상 메신저 그리고 이치에 맞는다면 출신교회에 적절하게 통보한다. 그러한 추천은 메신저들에게 다음 연례회의 사무회의 때 제출한다.

2. 총회는 특별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신설하고, 회원정원과 그리고 각 특별위원회의 기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업무를 정한다.
3. 공석이 연례회의 사이에 생기면 총재가 다른 총회 임원들과 상의하여 사람을 지명하고 공석을 채운다. 만약 공석이 임기가 다음 연례회의를 지나게 된다면 임명은 일시적인 것이고 Committee on Convention Committees가 임기를 채울 사람을 지명한다.

II. 총회 이사회와 기관

1. 연례회의 사이에 총회단위의 임시 권한은 이사회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2. 총회의 기관과 위원회

- a. 교육 기관 : Hannibal-LaGrange Collage, Hannibal; Missouri Baptist Collage. Creve Coeur in St. Louis County; and Southwest Baptist University, Bolivar.
- b. 자선 기관 : The Baptist Home, Ironton; and Missouri Baptist Children's Home, Bridgeton in St. Louis County.
- c. 위원회 : Christian Life Commission and Missouri Baptist Historical Commission
- d. 기타 : Missouri Baptist Foundation, Jefferson City; Windermere Baptist Conference Center, Roach; and *Word & way*, Jefferson City.

3.

- a. 목록에 실린 기관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두 번째 임기에 지명될 자격이 주어진다. 끝나지 않은 임기는 헌법이나 위원회 헌장에 의하여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전체임기로 고려한다. 기관 위원회에서 연임으로 일을 끝낸 후 같은 기관에서 12개월 동안에는 재임할 수 있는 자격이 기관헌장이 연임이상을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b. 총회 위원회(Convention board)에 공석이 생기면 회장(board chairman)이 총회지명위원회 의장에게 알린다. 위원회(board) 헌장이 막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위원회는 공석을 채운다. 위원회(board) 헌장이 이사회에 의한 선택을 대비하게 되면 지명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한 선택을 위하여 한 사람을 지명한다. 끝나지 않은 임기가 다음 연례회의를 지나게 될 때 헌법에 따라 총회는 공석을 채운다.

4. 미주리 침례 재단이나 말씀과 길(*Word & way*)이 한사람이 총회 이사회에 동시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같은 분류에 의하여 동시에 2개 이상 2조 2호에 실려 있는 기관 위원회에서 아무도 일 할 수 없다. 위에 실려 있는 기관 위원회의 회원자격도 없다. 2조 2호에 실려 있는 실체 위원회에 일하는 사람은 이사회에 의한 기관간 관계위원회에서 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총장이나 이사회에 의한 Windermere 신탁 위원회에 일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5. 2조 2호에 실려 있는 기관에 전임제 혹은 시간제 고용인일 경우 어느 총회 기관의 통치위원회에서 일 할 수 없다. 통치 위원회의 회원으로 고용인이 되었을 경우 그 회원은 위원회에서 사임하고 총회 지명위원회에 알린다. 총회 절차에 따라 공석을 채운다.

6. 각 기관은 자체 규약을 채택할 수 있는데 규약이 총회헌법, 규약 그리고 사무와 재무계획 과 모든 적용되는 연방법 그리고 주법과 모순되지 않을 경우이다. 기관은 이사회에 의한 사무총장과 함께 규약이나 거기에 더하여 각 개정안사본을 보관한다. 그리고 모든 규약은 합당한 요청에 의하여 미주리 침례회원들에게 공개한다.

II. 총회위원회, 부서, 그리고 위원회 표시

1. 각 총회위원회, 각 기관의 통치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는 목사와 일반인들을 회원으로 포함한다.

어느 한쪽의 분류이든 단체회원의 2/3가 초과할 수 없다. 목사라는 표현은 안수 받은 목사나 다른 교회에 연관된 고용인을 뜻한다. (목사들, 선교책임자들과 교회와 지방회의 교역자 일원)

2. 한 기관의 위원회를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한 사람은 같은 부류 기관이나 다른 위원회에 지명이나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안주어진다.
3. 총회위원회, 부서 그리고 위원회 업무기간의 취지를 위하여 총회 연도는 한 연례회의 폐회 후부터 다음 연례회의 폐회 때까지로 규정한다.

II. 이사회

이사회를 미주리 침례회 헌법 2조와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자체 편성하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조직

- a. 이사회를 거의 같은 규모의 상무위원회로 편성하는데 행정 위원회, 기관간 관계위원회, 그리고 기타 위원회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포함한다.
- b. 행정 위원회는 다른 상무위원회 의장들을 정회원과 같이 갖는다.
- c. 2개의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4인회원의 감사 위원회와 6인 회원의 Committee on Executive Board Committees. 이사회가 제정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대로 이사회 임원들은 Committee on Executive Board Committees의 6인 회원들 일반인들과 목사들의 같은 비율로 선발하고 임명한다. 이 위원회의 회원은 직책을 맡는 동안은 board Committee 또는 감사 위원회 신분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d.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은 모든 상무위원회의 투표권이 없는 회원들이다.

2. 위원회 의무

- a. 이사회는 모든 위원회의 설명과 그들의 책임들을 이사회 규약에 포함한다.
- b. Committee on Executive Board Committees의 의무는 상무 위원회, 감사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와 업무 집단의 회원들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명하는 것이다.

c. 감사 위원회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와 재무 계획에 의하여 규정된 조항들 유지하며 위원회(board)가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관의 고용을 위원회(board)에 추천한다.

(2) 회계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3) 회계 감사에 관한 것을 행정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직원의 구조와 조직

a. 이사회는 회계 담당자도 겸하는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b. 그는 이사회 대표이사이며 직원과 사무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그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방침과 지시를 수행한다.

c. 이사회 직원은 이사회 규약이 정한대로 준비한다.

4. 직원관리

a. 이사회 직원관리는 이사회 규약이 정하고 있다.

b. 이사회는 전문가, 사무원, 육체 고용인들을 위한 직무 내용을 규정한다.

c. 사무총장의 직무 내용은 이사회 규약의 한 부분으로 만든다.

5. 일반정책

a.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만나지만 필요시에는 자주 만난다.

b. 과반수는 이사회 그리고 각 위원회를 위한 정족수를 성립시킨다.

c. 각 기관의 회장, 비서, 그리고 행정임원에게는 이사회 회의록이나 board Committee의 회의록 사본이 제공된다. 이 사본은 개개의 기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d.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장에 의하여 소집되는 비밀회의를 제외하고,

재산의 매입, 매각 또는 직원 문제와 같은 것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위원회(board)와 board's 위원회의 회의들은 모든 미주리 침례교에 공개된다. 그리고 미주리 침례회 정식 뉴스저널(News Journal) 편집자 또는 보도기자는 공개회의에 자유로이 참석하고 진행을 보고한다. Board나 위원회는 미주리 침례교에 보고서를 미주리 침례회 정식 뉴스저널(News Journal)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고는 미주리 침례회 정식 뉴스저널(News Journal) 직원에 의한 뉴스보고와 편집자적 논평을 막을 수 없다.

Ⅱ. 보고, 동의, 추천과 결의 채택

1. 총회에 의한 기관보고, 채택은 총회에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개정한대로 동의나 추천의 채택은 총회의 뜻의 표현으로 간주되며 그러므로 총회에 의한 그 이상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구체적이거나 거기에 암시적인 단체나 단체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결의안 채택은 다음 연례회의 때 총회가 문제에 다른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는 총회의 생각의 표현으로 보며 지시가 아닌 총회 기관들에게는 참고, 그리고 교회들, 지방회들, 및 개개의 미주리 침례교에게는 자료가 된다.

Ⅲ. 지역

1. 헌법 Ⅱ와 Ⅲ조에 언급한 지역들은 첨부된 지도에 배열되어 있고 규약의 부분이다.(지역 지도는 미주리 침례회 규약 끝에 있다.)

Ⅳ. 규약 개정

1. 이들 규약은 어느 연례회의 때 2/3의 메신저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이들 규약에 대한 개정은 늦어도 연례회의 마지막 날 하루 전 사무회의가 끝나기 전 동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청을 받는 즉시 Committee on Continuing Review에게 연례회의 마지막 날 보고 하는 것으로 일임한다.